

RESEARCH ARTICLE

Historical Background and Implications for Author's Rights in the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Inhye Lee

Senior Researcher,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Republic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Inhye Lee (ihlee85@kiip.re.kr)

ABSTRACT

The author's rights or creators' rights found in Article 27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Article 15(1)(c)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cover all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s. These articles provide creators with the right to fair remuneration for their labor (material interests),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their moral interests in their productions.

This right is notable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because it includes a specific group of individuals (intellectual workers) in the ICESCR. It is particularly significant because it recognizes the right of authors to protect their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as a social and economic right that can require the state to ensure a minimum standard of living.

However,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the author's right of the ICESCR is not the same as the author's right und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It differs in that it protects only individual creativity, excluding the social functions inherent in IPRs. It is solely the right from a human rights perspective, focusing on the protection of human dignity and creativity. It is also remarkable in terms of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creators' protection in the international arena.

KEYWORDS

author's right, creators' right, right to scienc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ICESCR), UDHR, intellectual property, *travaux préparatoires*



Open Access

Citation: Lee I. 2024. Historical Background and Implications for Author's Rights in the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The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19(2), 45-73.

DOI: <https://doi.org/10.34122/jip.2024.19.2.3>

Received: February 04, 2024

Revised: February 25, 2024

Accepted: May 29, 2024

Published: June 30, 2024

Copyright: © 2024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Funding: The author received manuscript fees for this article from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원저

국제인권규범에서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역사적 배경과 그 함의

이인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원, 국제법 박사

*교신저자: 이인혜 (ihlee85@kiip.re.kr)

차례

1. 들어가며

2. 국제인권규범에서 창작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
 - 2.1. 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2항
 - 2.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 제1항 제c호
 - 2.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3.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규약의 준비문서(*travaux preparatoires*) 검토
 - 3.1.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서의 준비문서
 - 3.2. 미주인권선언에서의 창작자의 권리 보호 규정
 - 3.3. 세계인권선언 초안자들의 창작자의 권리 보호 논의
 - 3.4. 사회권규약 초안자들의 창작자의 권리 보호 논의

4. 국제인권규범에서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함의
 - 4.1. 특정한 개인집단을 위한 권리
 - 4.2. 지식재산권에 내재된 개인의 창작성만을 보호
 - 4.3. 국제영역에서 창작자 보호의 실효성 확대

5. 나가며

국문초록

창작자의 권리는 지식재산권 조약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등 국제인권규범에서도 기본적 인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국제인권규범상 창작자의 권리는 넓은 의미의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창작자에게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수 외에 창작물이 인류의 공동재산이 된 후에도 소멸되지 않는 창작품에 대한 정신적 권리와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물질적 이익을 보장하도록 한다.

이러한 권리가 국제인권규범에 포함된 것은 특정한 개인 집단을 위한 권리가 사회권규약에 포함되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국내법이 효력을 미치지 않는 국제영역에서도 창작자 보호의 실효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며, 특히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권리로서 창작자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으로서 큰 의의가 있다. 다만 이는 지식재산권에 내재된 사회제도적인 특성을 제외한 '개인의 창작성'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권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오로지 인간존엄성과 창의성 보호의 인권적 관점에서의 권리인 것이다.

오랜 기간 인권에 대한 하나의 공통된 기준을 선언하기 위해 노력한 UN 회원국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사회권규약 당사국은 창작자의 권리가 갖는 본질적인 권리의 특성과 내용을 이해하고, 다른 인권과의 조화로운 향유를 위하여 국내적 관행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시정조치 마련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규약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주제어

국제인권규범, 창작자의 권리, 지식재산권, 세계인권선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사회권규약, 미주인권선언, 과학에 대한 권리

1.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 창작자의 권리는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의 법률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22조 제2항을 통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헌법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제헌헌법부터 규정해 왔다.¹⁾ 그러나 구체적인 목적이나 보호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여, 해석을 두고 여러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²⁾ 다만 이 규정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것과 창작자의 권리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는 해석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국제법에서는 창작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을까? 기본적으로 창작자의 권리는 권리 내용에 따라 관련된 별도의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국제인권규범인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27조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의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러 국제문서들은 이러한 규정들과 지식재산권이 동일하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다.³⁾ 이러한 해석을 토대로 국제인권규범에서의 창작자의 권리와 우리 헌법상 창작자의 권리를 비교하면 보호의 대상은 지적 산물에 대한 창작자의 이익으로 동일하나, 권리의 범위와 속성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하위 법률(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로 별도로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상 특허권을 살펴보면, 특허권의 형태로 보호하는 창작자와 지적산물 사이의 인격적인 연결, 그리고 이로 인한 물질적 이익은 국제인권규범에서 보호하는 창작자의 권리와 동일하나, 특허권에 포함된 사회제도적인 권리의 특성, 즉 한정적인 보호 기간과 취소, 양도할 수 있는 특성은 국제인권규범상의 권리와 다르다. 이러한 특성들은 헌법이 아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창작자의 권리 외 특성들까지 헌법 제22조 제2항의 권리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을 바탕으로, 창작자의 권리를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인권규범을 살펴보고, 주요 조항들이 어떻게 규정되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 후에 이러한 규정이 국제인권규범에 포함된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본고에서

- 1) 1948년 제헌헌법 제14조 후문에서 “저작자, 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헌법이 그 중요성을 특히 인식하고, 과학, 예술, 기술의 발달을 조장하기 위하여 명시한 것이다. 이규홍·정필운, 「헌법 제22조 제2항 관련 개헌론에 관한 소고-지식재산권조항의 재검토에 관하여-」, 「법조」, 제59권 제11호(2010), 88면; 또한 헌법에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규정한 국가는 미국(헌법 제1조 제8항 제8호),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제158조), 구소련 헌법(제47조), 구동독 헌법(제11조) 등이며, 대부분 국가는 일반 재산권 보장 조항에 의하여 보호하고 있다. 박성호, “지식재산권에 관한 헌법 제22조 제2항의 의미와 내용”, 「법학논총」, 제24권 제1호(2007), 5면.; 한편 법률로 보호한다는 내용만 규정한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경우는 헌법에서 제한적인 기간 동안만 발명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보호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발달을 촉진시키도록 한다는 목적 또한 포함하고 있다. 최승재·이진수, “헌법 제22조와 발명자권, 특허법개정에 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6권 제3호(2021), 35면.
- 2) 지식재산권을 재산권으로 보호한다는 견해는 한국 헌법학계의 전통적, 통설적 견해이며 미국과 독일, 일본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이와는 달리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함께 규정되어 있음에 주목하여 천부인권적 재산권이 아닌,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형성되는 독자적인 권리로 보는 비재산권설로 나뉜다. 이규홍·정필운, 상계서(각주1), 79-83면; 헌법재판소 관련 결정들에서도 헌법적 원리에 대한 일반론적 설시가 주류이며, 지식재산권 보호의 독자적인 의미나 그 가치를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강명수, “지식재산권 보호의 균형과 헌법의 개정 방향”, 「법과정책」, 제27권 제3호(2021), 11면.
- 3)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17호 및 25호와 특별보고관의 보고서(Report on patent policy and the right to science and culture, A/70/279, 2015),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 작성한 지식재산권과 인권 보고서(1998),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된 Maria Green의 보고서(Drafting history of article 15(1)(c)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2000)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는 사회권규약의 외교부 번역을 참조하여 원문의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은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 번역하였으며, 'author'의 경우, 규약에서 해당 용어가 저작자뿐 아니라 과학자, 발명자, 예술가의 의미도 포괄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상의 저작자와는 차이가 있어, '창작자'라는 용어로 번역하였다.⁴⁾

2. 국제인권규범에서 창작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

창작자의 권리가 국제적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883년 채택된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과 1886년 채택된 '문학 및 예술작품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이며,⁵⁾ 이외에도 지식재산권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조약이 탄생하였다.⁶⁾ 다음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직접 다루지는 않았으나 창작자의 권리를 규정하거나 관련된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인권규범에 대해 살펴보겠다.

2.1. 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2항

세계인권선언은 국제기구에 의해 선언된 최초의 포괄적 인권문서로, 세계 인권 역사의 이정표가 되는 국제문서이다.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세계는 다시는 잔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UN을 창설하였으며, UN헌장을 보완하여 전 세계 모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드는 데 착수하였고, 다양한 법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대표들이 초안을 작성하여 1948년 12월 10일 UN 총회에서 모든 민족과 모든 국가를 위한 공통의 기준으로 선포되었다.⁷⁾ 세계인권선언은 보편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크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두 가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동 선언은 조약이 아닌 UN 총회의 결의로 채택되어 원칙적으로는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나, 현재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대다수이다.⁸⁾ 세계인권선언 이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규약')과 사회권 규약

4) 초안 논의과정에서 'author' 외에 'inventor', 'artist'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점과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품을 만들어낸 당사자를 포괄하는 용어라는 점에서 '저자'를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본고에서는 '창작자'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초안 논의 시부터 '발명'이 포함되었다가 제외된 것이 발명의 보호를 포함시키는 경우 건강권, 식량권 원주민의 권리와의 긴장관계를 우려한 초안자들의 의도였다고 주장하는 의견과 저작권은 창작의 표현이나 특허권은 혁신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이므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의견에 의하면 'author'는 '저작자'로만 해석해야 할 것이다. UN General Assembly, Cultural rights, A/70/279, 2015, para.28.

5) 파리협약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조약으로, 이러한 보호를 당사국간 상호 보장하기로 한 내국민대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베른협약은 저작물의 높은 수준의 보호를 위해 무방식주의 및 내국민대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6) 국제협력을 목표로 하는 조약들, 즉 특허출원을 단일화하여 국제출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과 1967년 지식재산권기구 설립조약(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등이 탄생하였다. 1994년에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에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협정')을 채택하여 무역체계 속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보장하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지식재산권 분야의 보호 정도를 강화하였다.

7) 김영석, 「국제법」, 박영사, 2010, 430면.; 50개 이상의 회원국이 최종 초안 작성에 참여하였으며,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열린 총회는 결의 제217호 A (III)를 통해 8개국이 기권하고 반대는 하지 않은 채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게 되었다. United Natio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https://www.un.org/en/about-us/universal-declaration-of-human-rights>>, 검색일: 2023. 12. 18.

8) 김영석, 상계서(각주7), 430-434면; 세계인권선언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는 견해는 다음의 세 가지로, UN헌장상의 조항에 대한 유권적 해석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견해, 국제관습법적 지위를 갖는다는 견해, 또는 법의 일반원칙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견해 등이 있다.

이 채택되며 사실상 세계인권선언에서 규정하고자 한 내용들이 조약화되었으며, 오늘날 전 세계 약 70개 이상의 인권 조약 채택에 기반이 되기도 하였다.⁹⁾

세계인권선언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 발달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는 점을 알리고자, 제27조 제1항에서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문화생활 참여에 대한 권리와 과학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창작자 또는 저자의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였다.

2.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 제1항 제c호

세계인권선언의 채택 이후 UN 인권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인권문서를 만들기 위해 작업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 사회권규약과 자유권규약을 1966년 UN 총회에서 채택하였다.¹⁰⁾ 현재 172개국이 당사국인 사회권규약은 세계인권선언에서보다 더 포괄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10개의 실체적 규정과 차별금지 및 평등에 관한 2개의 일반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실체적 규정에는 근로에 관한 권리(제6조),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제7조), 노동조합(제8조), 사회보장(제9조), 가족, 모성 및 아동(제10조), 적절한 생활수준(제11조), 건강(제12조), 교육(제13조, 제14조), 문화생활 참여 및 과학의 이익 향유, 창작자의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제15조)가 규정되어 있고, 제11조에서 식량, 주거, 의복에 대한 개별 권리들을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와 함께 규정하고 있다.¹¹⁾ 이 중 제15조에서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제15조 제1항 제a호)와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제15조 제1항 제b호),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제15조 제1항 제c호),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자유에 대한 권리(제15조 제3항)를 규정하고 있다.

제15조 제1항 제c호를 살펴보면, 권리의 주체로 ‘author(저작자)’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author’는 뒤의 문구에서 볼 수 있듯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품을 창작한 창작자를 말한다. 즉 용어 그대로 저작자뿐 아니라 과학자, 발명자, 예술가 등의 다양한 창작자를 포함하며, 일정한 경우 개인들의 집단이나 공동체에 의해서도 향유될 수 있다. 개인에 대해서만 보호 가능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나 사회권위원회는 당시 초안자들이 지식재산권을 자연인만 보유할 수 있다고 간주하여 법인과 같은 단체나 집단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 보고 있다. 또한 ‘author’의 표현에 대하여 저작권만이 창작의 표현물이고 특허권은 인센티브의 하나이므로 발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발명을 포함하는 경우 다른 인권과의 긴장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초안자들이 초기에 포함되었던 ‘inventor’라는 용어를 삭제한 것이라는 의견 등 저작자만 주체가 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¹²⁾

9) United Nation, *supra* note 7.

10) 김영석, 상계서(각주7), 434-435면.

11) Ben Saul, “Introduction: The Drafting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48-1966 (September 21, 2015).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RAVAUX PREPARATOIRES”, *Sydney Law School Research Paper*, No. 15/79(2016), p. 3.

12)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CESCR), “General Comment No. 17: The Right of Everyone to Benefit from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or She is the Author (Art. 15, Para. 1 (c) of the Covenant)”, E/C.12/GC/17, UN, 2006, paras. 7-8.; UN General Assembly, *supra*

창작자의 창작품에 대해서는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 정신의 산물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과학적 창작물에는 원주민과 지역공동체의 지식, 기술혁신, 풍습 등이 포함되며, 문학적 및 예술적 창작품에는 시, 소설, 회화, 조각품, 음악작곡, 연극 및 영화작품, 공연, 구전작품 등이 포함된다.¹³⁾

보호의 대상 중 창작자의 ‘정신적 이익(moral interests)’이란 창작자의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수 이외에, 그들의 저작물 및/또는 발견이 인류의 공동재산이 된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는 그들의 작품에 대한 정신적 권리를 말한다.¹⁴⁾ 이는 세계인권선언 초안 논의 과정에서 프랑스에 의해 주장된 바로, Cassin 교수는 인간정신의 모든 산물이 갖는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성격, 창작자와 그 저작물 간의 영속적인 유대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¹⁵⁾ 창작자의 ‘물질적 이익(material interests)’은 창작자의 인격과 직접적인 연결은 없으나 창작자가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이익을 말한다. 사회권위원회는 창작자의 물질적 이익은 일회성으로 지불되거나 저작물을 이용할 독점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달성된다고 보고 있다.¹⁶⁾ 또한 이러한 창작품에서 직접적으로 생성된 이익만을 보호하며 파생된 창작품에 대한 이익을 보호하지는 않는다.¹⁷⁾

그러나 보호방식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고 이러한 권리를 인정할 것만 명시하고 있는데, 사회권위원회는 동조의 보호 수준이 현행 지식재산권 체제에서의 수준과 방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창작자의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정도라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권리 향유를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¹⁸⁾

2.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년 사회권규약과 함께 채택되어 현재 174개국의 당사국을 보유하고 있는 자유권규약은 세계인권선언상의 시민적, 정치적 자유 및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UN 헌장상의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자유권규약은 자결권, 생명권, 고문 및 잔혹한 처우 금지, 신체의 자유, 종교 및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 기본적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명시적으로 창작자의 권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창작자의 권리와 갈등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련이 있다. 자유권규약 제19조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에 있어서 저작권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표현의 자유와 상표권의 충돌, 저작권의 집행에 있어서 획일적인 제재로 인해 처벌의 불균형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제14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지식재산권의 집행이 충돌할 수 있다.¹⁹⁾

note 4.

13) UN CESCR, supra note 12, para. 9.

14) Id., para. 12.

15)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Working Group on the Declaration on Human Rights, Addendum to the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Commission on Human Rights, 2nd session, E/CN.4/57, 1947, p. 15.

16) UN CESCR, supra note 12, paras. 15-16.

17) Id., para. 17.

18) Id., paras. 10-11.

19) Jonathan Griffiths,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Right to a Fair Trial"

3.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규약의 준비문서(*travaux préparatoires*) 검토

3.1.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서의 준비문서

교섭기록이라고도 불리는 준비문서(*travaux préparatoires*)는 조약이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을 파악하고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확인하기 위한 해석의 보충적 수단이다.²⁰⁾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규약의 역사적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UN 총회, 인권위원회, 초안위원회 등의 회의기록과 각 회차별 초안들, 총회 등에서 참고를 위해 발표된 전문가의 보고서 등 준비문서를 살펴보아야 한다. 준비문서는 비록 보충적 해석 수단이지만 실무 외교에서는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국제재판에서도 조약의 정확한 의미 확인을 위해 이를 참작한다.²¹⁾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32조에서는 협약 제31조 해석의 일반규칙에 따라 조약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의미를 확인하거나, 이에 따른 해석 시 조약 문언의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애매하게 되는 경우, 또는 명백히 불투명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조약의 교섭 기록 및 체결시의 사정을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²²⁾

비엔나협약에서는 임의규정으로 준비문서의 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약의 해석과 관련된 국제재판 실례에서는 소송서류의 일부로 준비문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를 찾기 어려울 정도이며, 사실상 필수적 요소인 것처럼 준비문서가 활용되고 있다.²³⁾ 그러나 모든 정황이 준비문서에 담기지 못하고, 후속적으로 조약에 참여하는 국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준비문서는 2차적인 보충적 수단으로만 이용해야 한다.²⁴⁾

본고에서는 세계인권선언 제27조와 사회권규약 제15조에서의 창작자의 권리 보호 규정에 대한 보다 면밀한 이해를 위해 초안 논의과정에서의 회의기록과 여러 차례 개정된 초안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준비문서를 창작자의 권리 보호 규정의 해석을 위한 보충적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준비문서를 살펴보기 전에 세계인권선언보다 앞서 작성되어 선언 초안과정에 많은 영향을 준 미주인권선언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January 18, 2016), Edit. by C Geiger, Edward Elgar, Research Handbook on Human Rights & Intellectual Property, 2015, pp. 1, 12. 이는 불균형적인 형사처벌의 적용을 금지하는 EU 기본권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제49조 제3항과 같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해 부과하는 형사 처벌이 비례적이지 않다는 주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까지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이와 같이 불균형적인 처벌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이 성공한 적은 없으나 더욱 강력해지는 집행 제도에 대해 잠재적인 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20) 정인섭, 「조약법 강의」, 박영사, 2016, 198면.

21) 상계서, 198-200면.

2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2조 해석의 보충수단

제31조의 적용으로부터 나오는 의미를 확인하거나, 제31조에 따른 해석 시 다음과 같이 되는 경우 그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약의 준비작업 및 체결 시의 사정을 포함한 해석의 보충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

가.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불명확하게 되는 경우, 또는

나. 명백히 부조리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23) 이에 대해서 Lauterpacht는 확고한 위치를 보장받는 국내법원과 달리 재판관의 주관적 논리에 좌우될 수 있는 국제재판소 판결의 경우 문언적 해석에만 의존하기 어려우므로 최대한 많은 요소에 근거한 해석론을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황준식, “조약법상 준비문서(*Travaux Préparatoires*)의 지위 : The Status of *Travaux Préparatoires* in the Law of Treaties”,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 2022, 225-228면.

24) 정인섭, 상계서(각주20), 199면; 조약해석 담론에서는 준비문서의 부정적 속성으로 인해 준비문서가 그 본질적 한계로 인해 결코 해석의 진정한 요소 또는 수단으로 신뢰될 수 없다는 점이 상기되어 오기도 하였으며, ICJ의 UN가입 관련 총회 권한 사건(1950년)에서 Alvarez 재판관은 텍스트가 모호한 경우조차 준비문서의 활용을 전면 반대하며, 국제기구 설립현장과 관련하여 준비문서의 가치가 점차 하락해왔다고 표현하기도 하는 등 국제재판 사례에서 준비문서를 보충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데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한다. 황준식, 상계서(각주23), 229면, 231면.

3.2. 미주인권선언에서의 창작자의 권리 보호 규정

지역인권규범으로 가장 오래된 ‘사람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선언(American Declaration on the Rights and Duties of Man, 이하 ‘미주인권선언’)'은 UN체제 하의 인권규범 성립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미주인권선언은 1948년 당시 21개 미주국가 회원국으로 구성된 미주기구가 채택한 첫 번째 지역적 국제인권문서로,²⁵⁾ 세계인권선언보다 6개월 이상 앞서 채택되어 세계인권선언 초안 작성 시 많은 영향을 주었다. 미주기구는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문서와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선언을 작성하면서 국가가 자국민 및 관할권 내의 외국인에 대해 갖는 의무에 대한 초안을 미주사법위원회(Inter-American Juridical Committee)에 작성하도록 하였다.²⁶⁾

미주사법위원회가 작성한 초기 초안 제15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과학의 발견과 발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혜택을, 발견이나 발명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산업과 기술에 공정하게 보상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공유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예술과 과학의 발전을 장려할 의무가 있지만, 상표, 특허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률이 모든 사람에게 과학의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게 하는 독점의 확립에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국민에게 공포와 불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과학적 발견을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2년 후 작성된 최종 초안에서는 후단의 내용에 문학적, 예술적 저작권, 특허, 산업 및 상업 상표의 보호를 위한 법률이 독점을 확립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미주사법위원회 초기 초안 (1945년 12월 31일)	미주사법위원회의 최종 초안 (1947년 12월 8일)	미주인권선언 (1948년 4월 30일)
제15조 ²⁷⁾ 과학의 이익을 공유할 권리	제15조 ²⁸⁾ 과학의 이익을 공유할 권리	제13조 ²⁹⁾ 문화 혜택을 누릴 권리
모든 사람은 과학의 발견과 발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혜택을 발견이나 발명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산업과 기술에 공정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조건 하에서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예술과 과학의 발전을 장려할 의무가 있지만, 상표, 특허 및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률이 모든 사람이 과학의 혜택을 공유하지 못하게 하는 독점을 확립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과학적 발견이 국민에게 공포와 불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모든 사람은 과학의 발견과 발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혜택을 발견이나 발명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산업과 기술에 공정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조건 하에서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예술과 과학의 발전을 장려할 의무가 있지만 문학적 및 예술적 저작권, 특허, 산업 및 상업 상표의 보호를 위한 법률이 독점을 확립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과학적 발견이 공포와 불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향유하며 지적 진보, 특히 과학적 발견으로 인한 혜택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발명품이나 자신이 저자인 문학적, 과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과 관련하여 자신의 정신적 및 물질적 이익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25) 미주기구는 평화와 정의의 지역 질서를 구축하고 지역 간 연대를 증진하며 주권, 영토 보전 및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UN 헌장 제52조와 53조에서 인정하는 지역기구이다. 현재 약 3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국가로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이다. 미주기구 헌장 제1조 및 UN 헌장 제52조, 제53조.

26) Cesare P.R. Romano, "The Origins of the Right to Science: the American Declaration on the Rights and Duties of Man"(April 27, 2020), Edit. by Porsdam H. and S. Porsdam Mann, The Right to Science: Then and Now, Cambridge University Press, Loyola Law School, Los Angeles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No. 2020-12, 2020, p. 6.

27) Preliminary Draft. Article XV: Right to Share in Benefits of Science

이러한 규정이 포함된 것에 대해 미주위원회는 제15조의 원칙은 민주국가는 협력적 연방이며, 발견과 발명의 기회는 여러 세대에 걸친 진보적 노력의 결과이고, 각 세대는 이전 문명의 상속자이므로, 뛰어난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이익을 집단적으로 공유할 자격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모든 사람이 과학의 혜택을 공유하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에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가는 특허와 저작권을 통한 개인의 주도성 장려와 특권의 남용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였다.³⁰⁾

이후 1948년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된 미주인권선언에서는 조금 더 간략한 형태가 되었다. 선언 제13조에서는 문화생활 참여에 대한 권리, 예술을 향유할 권리, 과학적 발견으로 인한 혜택에 참여할 권리와 함께 창작자의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초안에서는 지적 노동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조항이 없었으나 멕시코 대표단의 제안으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³¹⁾

사법위원회의 초안에서는 ‘공정한 보상(fair return)’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가 미주인권선언에서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 바뀌며 조금 더 구체화되었다. 동 조항 채택 과정에서 미국 대표단은 ‘문화에 관한 권리’가 필수적인 인권이 아니므로, 저작자와 발명자의 보호에 관한 권리를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하였으나, 쿠바의 강력한 지지로 선언에 포함되었다.³²⁾ 이와 같은 논쟁은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규약의 초안 논의 시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미주인권선언에서의 규정과 유사한 형태로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규약에 규정되었다.

Every person has the right to share in the benefits accruing from the discoveries and inventions of science, under conditions which permit a fair return to the industry and skill of those responsible for the discovery or invention. The state has the duty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the arts and sciences, but it must see to it that the laws for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patents and copyrights are not used for the establishment of monopolies which might prevent all persons from sharing in the benefits of science. It is the duty of the state to protect the citizen against the use of scientific discoveries in a manner to create fear and unrest among the people.

28) Final Draft. Article XV: Right to Share in Benefits of Science.

Every person has the right to share in the benefits accruing from the discoveries and inventions of science, under conditions which permit a fair return to the industry and skill of those responsible for the discovery or invention.

The state has the duty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the arts and sciences, but it must see to it that the laws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copyrights, patents, and industrial and commercial trademarks are not used for the establishment of monopolies. It is the duty of the state to protect the citizens against the use of scientific discoveries in a manner to create fear and unrest.

29) Article XIII. Right to the benefits of culture.

Every person has the right to take part in the cultural life of the community, to enjoy the arts, and to participate in the benefits that result from intellectual progress, especially scientific discoveries.

He likewise has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his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as regards his inventions or any literary, scientific or artistic works of which he is the author.

30) Cesare P.R. Romano, *supra* note 26, p.14.

31) William A. Schabas, "Study of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Edit. by Y. Donders and V. Volodin, *Human Rights in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Legal Developments and Challenges*, Ashgate, 2007, p. 2720.

32) Cesare P.R. Romano, *supra* note 26, p.17.

3.3. 세계인권선언 초안자들의 창작자의 권리 보호 논의

3.3.1. 세계인권선언 초안의 출발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창설된 UN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인류에게 자행된 만행을 반복하지 않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을 위해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을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을 반영하여, UN 헌장 준비위원회가 인권위원회의 초기 활동 목표를 제안하였는데 첫 번째로 제시된 것이 ‘국제권리장전의 제정’이었다. 이는 세계인권선언 초안 작성의 출발점이 되었다.³³⁾

세계인권선언 초안 작성 이전에 개최된 1947년 제1차 인권위원회 회의에서는 인권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국제문서 역할을 할 국제권리장전의 작성과 강력한 집행요소를 갖춘 법적 문서 작성 사이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놓고 견해가 대립되기도 하였으나,³⁴⁾ 선언을 먼저 작성한 후 구속력 있는 인권규약을 채택하기로 합의되었다. 이후 1947년 2월, 인권위원회 제1차 회의(E/259)의 결정에 따라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중국, 레바논, 미국에 더해 호주, 칠레, 프랑스, 소련, 영국의 대표를 포함하는 초안위원회(Drafting Committee)가 설립되었다.³⁵⁾ 초기 초안은 UN 사무국의 John P. Humphrey 인권국장이 작성하였는데, 각국의 헌법과 당시 논의 중이던 미주인권선언의 사법위원회 초안을 참고하면서 창작자의 권리가 포함되었다.³⁶⁾ 제1차 초안위원회 회의에서는 사무국이 작성한 예비 초안(E/CN.4/AC.1/3)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초안에는 개인의 인권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48개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문학적, 과학적 그리고 예술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는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었다.³⁷⁾

제44조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향유하며, 과학의 혜택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

초안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E/CN.4/21)에는 인권에 관한 국제선언 초안(부속서 F)과 협약 초안(부속서 G)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기존 사무국 버전 초안 제44조에 규정되어 있던 과학과 문화에 대한 권리가 제35조로 이동하여,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예술을 향유할 권리, 그리고 과학적 발견의 결과로 인한 이익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³⁸⁾

33) William A. Schabas, *supra* note 31, pp. lxxvii-lxxviii. 또한 1946년 2월 말, 이사회에 의해 인권위원회가 설립된 후에 그들의 임무로 국제권리장전을 제정하도록 하는 결의가 채택되었다.

34) U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Drafting History, Commission on Human Rights - 1st Session”, UN LIBRARY, <<https://research.un.org/en/undhr/chr/1/>>, 검색일: 2024. 1. 13.

35) U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Drafting History”, UN LIBRARY, <<https://research.un.org/en/undhr/draftingcommittee/>>, 검색일: 2023. 12. 18.

36) UN 사무국은 수많은 국가 헌법을 수집하고 관련 국가 조항을 참조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초안 조항에 주석을 달았으며, 이를 통해 문서의 권위와 보편성에 많은 것을 더하고자 했다. Saul, Ben, *supra* note 11, p. 14.

37) 제4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Everyone has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cultural life of the community, to enjoy the arts and to share in the benefits of scienc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Drafting Committee on an International Bill of Rights, International Bill of Rights documented outline, E/CN.4/AC.1/3, 1947.

38) 제3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Everyone has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cultural life of the community, to enjoy the arts, and to share in the benefits that result from scientific discoveries.”,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Drafting Committee on an International Bill of Rights, Drafting Committee on an International Bill of Rights, 1st session : report of the Drafting Committee to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E/CN.4/21, 1947.

제35조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예술을 향유할 권리, 그리고 과학적 발견의 결과로 인한 이익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파나마 대표는 해당 조항의 내용이 이미 초안에 채택된 다른 조항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생략할 것을 제안하였고 프랑스 대표단 René Cassin은 이 조항이 문화생활 참여라는 새로운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UN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이하 'UNESCO') 또한 모든 사람은 문화에 참여할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물질주의적 개념보다 문화적 생활의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의장은 선언문에서 제35조를 유지할지 여부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여, 실무그룹 3대1, 기권 2표의 결과로 해당 조항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1947년 12월 2일부터 개최된 인권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많은 회원국들은 선언이 규약에 선행하는 것일 때만 수락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의견을 밝혀, 선언문과 규약, 두 개의 문서를 작성하라는 초안위원회의 권고를 승인하였다. 이후 제29차 회의에서 선언, 협약, 이행 측면을 각각 검토하기 위한 3개의 개별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실무그룹 차원에서 선언문의 형태 및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3.3.2. 창작자의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에 대한 논의

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2항의 창작자의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 규정은 초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여러 논의를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포함되었는데 이를 특히 강조한 국가는 프랑스와 멕시코였다. 1947년 7월 1일, 초안위원회의 보고서(E/CN.4/21)에 대한 인권위원회 회의에서 프랑스의 Cassin은 창작자가 저작권의 권리나 문학적 소유권과는 다른 그들의 발견과 창작품에 대한 정신적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노동에 대한 보수 외에 정신적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는 창작품이 인류공동의 재산이 된 후에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35A조를 제안하였다.³⁹⁾

제35A조

모든 예술적, 문학적, 과학적 창작품의 저자와 발명자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 외에 창작품 및/또는 발견에 대한 정신적 권리를 보유하며, 이는 그러한 창작품이 인류공동의 재산이 된 후에도 소멸하지 않는다.

소련 대표는 이 문제가 양자, 다자협약에서 다룰 문제라고 지적하였고, 필리핀 대표는 정신적 권리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법적 권리는 문학적 소유권 관련 규정에서 다루고 있음을 알렸다. 의장은 이 제안을 표결에 부쳐 2대2, 기권 2표로 부결시켰다.⁴⁰⁾ 이후 프랑스 대표단은 한 차례 더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거절되었다.⁴¹⁾

39) "Authors of all artistic, literary and scientific works and inventors shall retain, in addition to the just remuneration of their labour, a moral right on their works and/or discovery, which shall not disappear, even after such work shall have become the common property of mankind."

40) William A. Schabas, *supra* note 31, pp. 1128-1129.

41) 초안위원회에서 제안되었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RTICLE 35A "Authors of all artistic, literary and scientific works and inventors shall retain in addition to the just remuneration of their labour, a moral right on their work and/or discovery, which shall not disappear, even after such work shall have become the common property of mankind",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supra* note 15.

제3차 인권위원회에 제출된 초안위원회 보고서(E/CN.4/95)에서는 Cassin이 제29조 휴식과 여가에 대한 권리에 문화생활 및 과학에 대한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함께 규정하고, 저자의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를 위한 내용을 제30조에서 별도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⁴²⁾

제29조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예술을 향유할 권리, 과학적 발견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공유할 권리를 갖는다.

제30조

창조적인 작품의 저자와 발명자는 금전적 권리와는 별도로 창작품 또는 발견에 대한 정신적 권리를 보유하며, 이는 금전적 권리가 소멸된 후에도 존속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아닌 일부 국민 또는 일부의 지적노동자(intellectual worker)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조항이 포함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낸 인도와 영국, 우루과이, 칠레가 프랑스 개정안에 반대하자,⁴³⁾ Cassin은 다시 제30조에 “누구나 발명품 또는 그가 저자인 문학, 과학 또는 예술 작품과 관련된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미국은 제29조 휴식과 여가에 대한 권리와 합친 하나의 규정을 제안하면서 정신적, 물질적 이익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시켰다.⁴⁴⁾ 다른 국가들은 정신적, 물질적 이익과 관련된 표현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1948년 인권위원회 제3차 회의를 위한 제3차 보고서(E/800)에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에 대한 표현 없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⁴⁵⁾

제25조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향유하며, 과학적 발전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

이후 1948년 11월 20일에 제3위원회 제150차 회의에서 멕시코의 Campos Ortiz는 임금노동자, 가족, 어머니, 아동의 권리는 이미 인정되었으므로 이제는 지적노동자, 과학자, 작가로서의 개인의 권리, 즉 인류의 진보와 복지에 기여한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선언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이런 형태의 인간 활동의 기여 없이는 사회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⁴⁶⁾ 미주인권선언 논의과정에서 지적 창작물의 보호를 제안한 것을 참고하여 제25조에 제2항으로 정신적, 물질적 이익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⁴⁷⁾

42) William A. Schabas, *supra* note 31, pp. 1864-1865.

43) *Id.*, p. 1865.

44) 미국이 제안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모든 사람은 휴식과 여가를 얻고, 공동체 집단과 공동체의 문화생활 및 관습에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적 발견으로 인한 이익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

45) “Everyone has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cultural life of the community, to enjoy the arts and to share in scientific advancement.”

46) UN,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Third Committee (3rd Session) Hundred and Fifty-Second Meeting, A/C.3/SR.150 (22 November 1948)”, United Nations Official Document System, <<https://daccess-ods.un.org/tmp/718784.630298615.html>>, 검색일: 2024.1.13.

47) Mexico, “Draft Internation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mendments to Articles 3, 6, 7, 14, 23 And 25 of the Draft Declaration (E/800) / Mexico”, A/C.3/266, UN, 1948. 멕시코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Add the following as the second paragraph: 2. He likewise has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his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as regards his inventions or any literary scientific, or artistic work of which he is the author.”

제25조

2. 자신의 발명품이나 자신이 저자인 문학적, 과학적, 예술적 창작품과 관련하여 자신의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멕시코 대표는 재산권이나 노동권 조항에서 다루고 있는 지적노동자의 권리는 소수의 급여를 받는 지적노동자에게만 해당되며, 독립적인 연구를 추구하는 모든 학자, 작가, 예술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국내법이나 협약으로 저작자와 발명자의 특허를 보호하고 있으나 국제 분야에서 그러한 보호의 효과는 상대적일 뿐이며, 보호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UN에서 이러한 조항을 인권 선언에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노동, 수작업, 지적 노동을 보호하고 지적생산을 물질적 재산과 동등하게 보호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전 세계에 선포해야 한다고 하였다.⁴⁸⁾ 쿠바도 유사한 개정안을 제시하며, 멕시코가 제안한 지적 보호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중요성에 동의한다고 지지하였다. 페루, 브라질, 베네수엘라, 네덜란드, 캐나다도 저작자와 발명자의 특허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신에 전적으로 동의하였다.⁴⁹⁾

Cassin 또한 많은 발명품들이 일상생활 속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 부터 시작되었고, 이들로 인해 일상적인 활동을 넘어 공동체의 삶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로열티와 특허만으로 보호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술가와 발명자의 정신적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였다. 많은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정신적인 측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연구를 인정받기를 원하고, 문학 또는 예술작품에 있어서 금전적 손실 없이도 왜곡되거나 복제되는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예술가나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보호할 권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⁵⁰⁾

하지만 정신적, 물질적 이익 보호 규정에 반대하는 국가들도 있었다. 의장이었던 미국의 Eleanor Roosevelt는 제안된 개정안에서 표현하고자 한 원칙은 수용할 수 있으나 제15조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 재산권의 특정 측면이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⁵¹⁾ 영국의 Corbet 대표는 발명의 저자로서의 인정과 더불어 발명에 따르는 소유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프랑스 개정안에 대해 발명에 따르는 소유권도 결국 소유권의 한 측면일 뿐이라 지적하였고, 저작권은 특별법과 국제 협약에서 다루어지는 것이지 기본적 인권이 아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다.⁵²⁾ 에콰도르 대표는 제25조에 대해 가장 혼란스럽고 모순적인 내용 중 하나라고 밝히며, 이미 교육권과 사상의 자유를 선언하며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었고, 재산권에서 문학적 또는 과학적 재산을 다루며, 예술과 문학작품은 인류유산 중 일부로, 대의를 위해 봉사하고, 모든 사람이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제25조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한 작가와 발명자의 권리를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⁵³⁾ 칠레 대표도 마찬가지로의 이유로 선언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였으며, 저작권과 특허에 대한 보호가 국내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 저작물이 동의 없이 복제된 것에 대해 기본적 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힘들다는 것을 덧붙였다.⁵⁴⁾

48) William A. Schabas, *supra* note 31, pp. 2719-2720.

49) 다만 캐나다는 저작권과 특허에 관한 내용으므로 선언문보다는 규약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Id.*, pp. 2722, 2724, 2743.

50) *Id.*, p. 2723.

51) *Id.*, p. 2723.

52) *Id.*, p. 2727.

53) *Id.*, p. 2721.

54) *Id.*, p. 2743.

3.3.3. 최종 문안의 채택

인권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앞서 제출된 초안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찬성 12표, 기권 4표로 재작성된 선언 초안을 채택하였다. 동 초안은 제3차 보고서(E/800)에 포함되었는데 제25조에서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향유하며, 과학적 발전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였다.⁵⁵⁾ 동 보고서는 제7차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에 제출되었으며, 1948년 8월 25일과 26일에 개최된 본회의에서 다루어졌다. 많은 회원국들이 선언 초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동시에 규약 초안과 이행 방안이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으나 논의 끝에 경제사회이사회는 1948년 8월 26일 결의 제151호(VII)를 표결 없이 채택하여 국제인권선언 초안을 총회에 제출하였다.⁵⁶⁾

이후 제3위원회는 채택한 선언문 전체의 배열, 일관성, 통일성 및 형식의 관점에서만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⁵⁷⁾ 제3위원회의 제178차 회의에서 문안 전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여 반대 없이 찬성 29표, 기권 7표로 채택되었다.⁵⁸⁾ 제3위원회의 보고서(A/777)는 1948년 12월 9일과 10일 양일간 열린 총회 본회의에서 심의되었으며, 동 보고서에 포함된 선언문 초안에서는 제28조에서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향유하며, 과학적 발전과 그 이익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저자인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였다.⁵⁹⁾ 여전히 일부 반대의견들이 있었으나 1948년 12월 10일, 총회는 48개 회원국의 찬성과 8개국의 기권으로 세계인권선언을 결의 제217호(III)로 채택하였다. 동 결의에서는 조문번호만 제27조로 변경하여 현재의 세계인권선언 제27조가 되었다.⁶⁰⁾

3.4. 사회권규약 초안자들의 창작자의 권리 보호 논의

사회권규약은 UN 헌장상의 의무로서 국제인권장전을 기획하며 선언과 구속력 있는 규약을 함께 논의하였으나 합의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선언을 우선적으로 채택한 후 규약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약 18년간의 토론과 협상을 통해 탄생한 구속력 있는 인권규범이다. 사회권규약에 포함될 인권 목록과 개념적 작업의 대부분은 선언 초안 작성 과정에서 일찍이 이루어졌으며,

55) 제25조는 다음과 같다. “Everyone has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cultural life of the community, to enjoy the arts and to share in scientific advancement.”,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3rd sess. : 1948 : Lake Success, NY), Report of the 3rd session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Lake Success, E/800, 1948.

56) Resolution 151(VII) of 26 August 1948.

57) UN General Assembly. 3rd Committee. Subcommittee 4, “Report of Sub-Committee 4 of the 3rd Committee / submitted by Alan S. Watt (Australia), Rapporteur”, A/C.3/400/Rev.1, UN, 1948.

58) UN General Assembly, “Hundred and seventy-eighth plenary meeting, held at the Palais de Chaillot, Paris, on Thursday, 9 December 1948 : [General Assembly, 3rd session]”, A/PV.178, UN, 1948.

59) 제28조는 다음과 같다. “1. Everyone has the right freely to participate in the cultural life of the community, to enjoy the arts and to share in scientific advancement and its benefits.

2. Everyone has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is the author.”, UN General Assembly (3rd sess. : 1948-1949 : Paris, etc.), 3rd Committee, “Draft Internation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report of the 3rd Committee : General Assembly, 3rd session”, A/777, UN, 1948.

60) UN General Assembly (3rd sess. : 1948-1949 : Paris, etc.), “Preparation of a draft Covenant on Human Rights and draft measures of implementation”, A/RES/217(III), UN, 1948. 최종 채택된 제 27조는 다음과 같다.

1. Everyone has the right freely to participate in the cultural life of the community, to enjoy the arts and to share in scientific advancement and its benefits.

2. Everyone has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is the author.

사실상 세계인권선언 제17조의 재산권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정은 사회권규약에 그대로 편입되었다.⁶¹⁾

초기에는 자유권규약 위주로 논의가 진행되어 사회권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국가들의 반대나 이의제기도 있었으나,⁶²⁾ 이후 이러한 사회권 규정을 규약 또는 후속문서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각국 정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총회에 사회권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결정할 것을 요청하였고,⁶³⁾ 1950년 12월 총회에서는 자유권과 사회권의 두 권리가 상호 연결되고 상호의존적임을 확인하고, 위원회에 자유권과 관련된 방식으로 사회권을 규약에 포함하도록 지시하였다.⁶⁴⁾ 이에 따라 사회권을 규약에 포함하게 되었고, 이후 1952년 2월 총회는 결의 제543호(VI)를 통해 자유권과 사회권을 단일 규약이 아닌 별도의 규약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⁶⁵⁾

3.4.1. 창작자의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에 대한 논의

1951년 제7차 회의에서 인권위원회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초안을 완성하였다. 문화에 대한 권리와 과학에 대한 권리에 관해서는 UNESCO가 두 가지 버전의 초안을 제출한 것을 토대로 논의하였으며,⁶⁶⁾ 이 중 긴 버전의 초안은 두 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문화에 대한 권리에 치중하여 보호를 규정하였고, 두 번째 항에서 별도로 창작자의 정신적, 물질적 권리를 보호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초기 UNESCO 초안 제d조⁶⁷⁾

서명국은 다음과 같은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과학과 문화의 보존, 발전 및 전파를 장려할 것을 약속한다:

(a) 서적, 출판물, 예술작품 등 국내적 및 국제적 문화생활의 표현에 대한 모든 접근과 과학적 진보 및 그 응용으로 인한 이익의 향유를 촉진함으로써,

61) Ben Saul, *supra* note 11, p.3.

62) UN,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Summary record of 42nd meeting, held at the Palais des Nations, Geneva, on Tuesday, 16 December 1947 : Commission on Human Rights, 2nd session", E/CN.4/SR.42, UN, 1947, p. 3.: 1947년 12월 인도 대표는 규약 초안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소련, 벨로루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우크라이나, 유고슬라비아 등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러한 권리가 배제되었다는 이유로 채택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벨기에, 레바논, 이집트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이후의 규약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는 근거로 규약 초안을 지지하였으며, 프랑스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비해 보편적으로 인식이 덜 되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면 규약의 신속한 채택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Ben Saul, *supra* note 11, pp. 17-18.

63) *Id.*, p.24.

64) resolution 421 (V), sect. E.

65) Ben Saul, *supra* note 11, p.18.

66) Maria Green in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이하 Maria Green), "Drafting History of the Article 15 (1) (c)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2000/15, UN, 2000, para.14.

67) Article (d). The Signatory States undertake to encourage the preservation, development and propagation of science and culture by every appropriate means: (a) By facilitating for all access to manifestations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cultural life, such as books, publications and works of art, and also the enjoyment of the benefits resulting from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 (b) By preserving and protecting the inheritance of books, works of art and other monuments and objects of historic, scientific and cultural interest; (c) By assuring liberty and security to scholars and artists in their work and seeing that they enjoy material conditions necessary for research and creation; (d) By guaranteeing the free cultural development of racial and linguistic minorities.

Article (e). The Signatory States undertake to protect by all appropriate means the material and moral interest of every man, resulting from any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of which he is the author.

(b) 서적, 예술작품, 기타 기념물 및 역사적, 과학적, 문화적 관심의 대상인 유산을 보존하고 보호함으로써,

(c) 학자와 예술가의 활동에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고, 연구와 창작에 필요한 물질적 조건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d) 인종 및 언어적 소수자의 자유로운 문화적 발전을 보장함으로써.

제e조

서명국은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자기가 저작한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창작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람의 물질적, 정신적 이익을 보호할 것을 약속한다.

이어서 제출된 짧은 버전의 초안에서는 현재의 규정과 유사한 형태의 조항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세계인권선언 제27조의 문구가 반복되었다는 데 우려를 나타내는 대표단도 있었으나,⁶⁸⁾ 두 번째 초안을 토대로 제7차 회의 논의가 진행되었다.⁶⁹⁾

UNESCO 대체안⁷⁰⁾

서명국은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과학과 문화의 보존, 발전 및 보급을 장려할 것을 약속한다. 서명국은 다음과 같은 모든 것을 허용하는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 주요 목표 중 하나임을 인식한다.

1.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2. 과학적 진보와 그 응용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할 권리;
3. 자기가 저작한 모든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

각 서명국은 자국의 조직과 자원을 고려하여, 그리고 본 규약 제1조 제1항에 명시된 차별금지원칙에 따라, 관할권 내 영토에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점진적으로 취할 것을 서약한다.

UNESCO의 두 번째 초안에서 제1항과 제2항은 초안위원회 3명의 기권과 15표의 찬성으로 반대 없이 채택되었으나, 창작자의 권리를 규정한 제3항은 4명의 기권과 7명의 찬성, 7명의 반대로 부결되었다.⁷¹⁾ UNESCO 대표단인 Havet은 창작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이미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되어 있고, 인류의 문화유산을 끊임없이 풍요롭게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는 것이므로 규약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선언 초안 작성 시부터 창작자의 권

68) 규약 초안의 문구가 세계인권선언에서의 표현을 반복할 것을 우려한 일부 대표단들이 있었으며, 덴마크의 경우, 선언에서의 문구가 반복되면 선언의 권위가 약화되고 규약에서 반복되지 않은 조항의 중요성에 대해 부당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초안위원회 의장이었던 미국의 Eleanor Roosevelt도 선언은 각국이 달성해야 할 기준에 대한 성명 차원이라면 규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두 문서는 다른 종류라는 것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Maria Green, *supra* note 66, para. 18.

69) Maria Green, *supra* note 66, para. 17.

70) The Signatory States undertake to encourage by all appropriate means, the conservation, the development and the diffusion of science and culture. They recognize that it is one of their principal aims to ensure conditions which will permit every one:

1.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2. To enjoy the benefits resulting from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3. To obtain protection for his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of which he is the author.

Each signatory State pledges itself to undertake progressively, with due regard to its organization and resources,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enunciated in paragraph 1, article 1 of the present Covenant, the measures necessary to attain these objectives in the territories within its jurisdiction.

71) Maria Green, *supra* note 66, paras. 21, 25.

리를 강하게 주장한 프랑스도 선언에서 명시된 창작자의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가 규약상의 권리에서 누락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현했다.⁷²⁾ 이에 반해 미국을 포함한 반대 입장에서는 UNESCO의 개별적 연구에 의해 주제의 복잡성이 정리될 때까지 저작권이 규약에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창작자의 권리가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⁷³⁾

이후 위원회는 1952년 4월부터 6월까지 열린 제8차 회의에서 자결권에 관한 공통조항 제1조를 시작으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하여 전문과 15개 조항의 사회권규약 초안을 채택하였다.⁷⁴⁾ 회의에서 다시 한 번 창작자의 권리를 논의하게 되었는데 프랑스 대표단은 규약 초안에 전문직 종사자의 재산과 사례금 보호 조항이 포함된 것을 언급하며, 창작자는 물질적 이익에 대한 부분뿐 아니라 표절, 도난, 훼손, 부당한 이용으로부터 자신의 창작품을 보호받을 정신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규약에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⁷⁵⁾ 그러나 여전히 미국, 영국, 유고슬라비아는 반대의 입장을 취하였다.⁷⁶⁾ 칠레 대표단은 지적 산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과학 연구 경쟁력과 특허를 보유하지 못한 저개발국은 결국 소수의 기업이 독점적으로 보유한 기술지식에 종속되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창작자의 권리 보호는 이러한 상황을 영속화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집트, 호주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취했다.⁷⁷⁾ 다시 진행된 표결에서 창작자의 권리에 관한 조항은 4명의 기권과 7대 6의 결과로 다시 한 번 부결되었으며,⁷⁸⁾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조항을 제외하고 총회에 제출되었다.⁷⁹⁾

1954년 제10차 회의에서는 두 개 규약의 초안에 대한 보고서(E/CN.4/L.366 및 Add.1-13)를 심의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했다.⁸⁰⁾ 동 초안에서는 제16조 제1항에서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함께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제2항에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과학과 문화의 보존, 발전 및 보급에 필요한 제반조치, 제3항에서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자유를 규정하고 있어, 창작자의 권리와 국제협력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현행과 동일하게 규정되었다.

인권에 대한 국제규약 초안 제16조⁸¹⁾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의 다음 권리를 인정한다:

72) Id., para. 22.

73) Id., paras. 22-23.

74) Ben Saul, *supra* note 11, p. 25.

75) Maria Green, *supra* note 66, para. 27.

76) Id., para. 28.

77) Id., paras. 29-30. 이에 대해 프랑스 대표단은 특허 분야의 독점이 칠레 대표단이 말한 것과 같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보호의 부재가 저개발국의 불리한 상황에 대한 구제책이 될 수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Maria Green, *supra* note 66, para. 31.

78) Maria Green, *supra* note 66, para. 31.

79) UN General Assembly, "Draft 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Annotation.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to the tenth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A/2929, UN, 1955.

80)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port of the 10th session, 23 February-16 April 1954", E/CN.4/705, UN, 1954, p. 64.

81) Draft 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Article 16.

1. The States Parties to the Covenant recognize the right of everyone:

(a)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b)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2. The steps to be taken by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venant to achieve the full realization of this right shall include those necessary for the conservation, the development and the diffusion of science and culture.

3. The States Parties to the Covenant undertake to respect the freedom indispensable for scientific research and creative activity.

(a)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b)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2. 이 규약의 당사국이 그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에는 과학과 문화의 보존, 발전 및 보급에 필요한 제반조치가 포함된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은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1957년 11월 4일, 제3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우루과이 대표단의 주장으로 다시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조항을 논의하게 되었다. 그러나 과거 논의 당시의 분위기와 달리 반대 입장이던 영국, 칠레 등이 찬성하였으며, 스웨덴, 이스라엘, 도미니카공화국 등도 이에 지지하였다.⁸²⁾ 한편 인도네시아 대표가 짧은 조항만으로 이 문제를 적절히 다룰 수 없다며 반대하였고, 이어 소련 대표가 창작자 권리에 대한 복잡성 때문에 규약의 균형이 깨질 것이며, 다른 규정이 모든 인류에 대한 권리임에 반해 제16조는 특정 집단에 관한 것이고,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었다고 해서 규약에서 자동적으로 반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저작권과 특허에 관한 국가 간 관계의 문제는 인권규약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특별협정에서 별도로 규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⁸³⁾ 이후 냉전의 단층선을 따라 사회주의 진영의 국가들은 주로 반대하였으며, 자유주의 진영의 국가들이 대부분 찬성하였다.⁸⁴⁾ 결국, 창작자의 권리에 관한 조항은 39대 9의 표차로 통과되었고, 24개 대표단은 기권하였다.⁸⁵⁾ 규약 초안의 준비는 1962년까지 제10차부터 제17차 총회 기간 동안 제3위원회에서 계속되었으며, 마침내 1963년에 최종 조항이 채택되었다 (A/5655). 이에 따라 제15조에 창작자의 권리가 포함된 규정이 채택되었다.

3.4.2. 최종 문안의 채택

1963년 12월 12일, 총회는 결의 제1960호(XVIII)를 통해 모든 정부에 제3위원회가 채택한 문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이듬해 제19차 회의에서 최종조항을 포함한 초안의 전체 문안을 채택하기 위해 인권위원회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정하였다.⁸⁶⁾ 이후 1966년 제21차 회의에서 제3위원회는 초안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총회는 본회의에서의 논의 끝에 1966년 12월 16일 결의 제2200호A(XXI)에서 사회권규약을 105대 0으로 최종 채택하였다.⁸⁷⁾ 사회권규약은 이후 35개 당사국이 비준하여 1976년 1월 3일에 발효되었다.

결과적으로, 세계인권선언 제27조에서 두 개의 조항으로 규정하던 것이 사회권규약에서 4개의 조항으로 바뀌었으며, 제27조의 두 개 조항의 권리는 사회권규약 제15조 제1항에서 3개의

82) Maria Green, *supra* note 66, para. 38.

83) *Id.*, para. 39.

84)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소련, 알바니아, 불가리아, 벨라루스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이라크가 반대하였고, 멕시코, 모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파나마, 페루,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실론,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덴마크,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핀란드, 프랑스, 가나,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가 찬성하였다. *Id.*, para. 43.

85) 제16조 제2항과 제3항은 기권 1표, 71표의 찬성으로 채택되었으며, 수정된 제16조 문안 전체 또한 기권 1표, 71표의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UN General Assembly,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s, 12th session : 3rd Committee, 799th meeting, Monday, 4 November 1957, New York", A/C.3/SR.799, UN, 1957, p. 191.

86) UN General Assembly, "Draft 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A/RES/1960(XVIII), UN, 1964, p. 43.

87) Mónica Pinto,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https://legal.un.org/avl/ha/icescr/icescr.html>>, 검색일: 2023. 12. 19.

호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과학과 문화의 보존, 발전, 보급에 필요한 제반조치에 대한 의무, 제3항에서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자유에 대한 권리, 제4항에서 국제적 협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제27조의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표현이 규약 제15조 제1항 제b호에서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로 바뀌면서 과학연구에 ‘참여’할 권리가 제외된 것 같이 표현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과학의 진보 및 응용에 ‘참여’하고 그 이익을 향유할 권리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세계인권선언과 표현적 차이가 있을 뿐 권리 내용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⁸⁸⁾

제15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의 다음 권리를 인정한다.

(a)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b)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c)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

2. 이 규약의 당사국이 그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에는 과학과 문화의 보존, 발전 및 보급에 필요한 제반조치가 포함된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은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적 접촉의 장려와 발전 및 과학과 문화분야에서의 협력으로부터 이익이 초래됨을 인정한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상의 권리가 사회권규약에 반영되면서 다른 권리들은 훨씬 구체화된 것에 비하면 창작자의 권리는 큰 변화가 없고 여전히 이행을 위해서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수준으로 남았다. 이에 따라 권리 실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학문적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미개발 상태’ 내지는 ‘내용과 범위 면에서 정교하지 못하고 이행 측면에서도 소홀’하다거나, ‘권리가 모호하고 해석이 부족하여 이러한 조항의 존재 자체를 알기가 어려울 정도’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⁸⁹⁾

또한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싸고 초안자들이 오랜 논쟁 끝에 채택한 이유에 대해 창작품의 인격적 측면을 통제하는 개인적 권리를 포함하려는 의도였거나, 발표된 창작품의 무결성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창작자의 권리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거나 단순히 저작권법을 강화하고자 주장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⁹⁰⁾ 창작자의 권리를 규정한 이유를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준비문서를 통해 채택의 배경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이러한 분석은 사회권규약 제15조 제1항 제c호의 문언적 의미를 해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88) 사회권위원회가 일반논평 25호에서 이와 같이 해석한 바 있으며, Samantha Basson도 참여적 권리로 간주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Samantha Besson, “The ‘Human Right to Science’ qua right to participate in science : The participatory good of science and its human rights dimension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Vol.28 No.4(2023), p. 15.

89) Lea Bishop(formerly Lea Shaver), “The Right to Science and Culture”, *Wisconsin Law Review* 2010, No.1(2009), p. 126.

90) Maria Green, *supra* note 66, para.45.

4. 국제인권규범에서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함의

창작자의 권리를 국제적으로 보호하는 조약에는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과 문학 및 예술작품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과 같이 지식재산권의 한 분야에 대한 특수한 조약이 있으며, 무역 관련 TRIPS 협정, 그리고 국제인권규범인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규약이 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별도의 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규범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게 된 것에는 다음의 세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개인의 권리를 규정한 조약에 ‘특정한 개인 집단’을 위한 권리가 사회권에 포함되었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인권규범에서의 규정은 지식재산권에 내재된 사회제도적 기능을 제외한 개인의 창작성만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구속력 있는 규약에 포함됨으로써 국제영역에서 인권으로서의 창작자 보호의 실효성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함의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다음의 배경적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첫 번째는 국제권리장전이 제정되던 1940년에서 1950년대에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국제사회의 정의와 평화 재건에 집중하던 시기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여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념 대립이 심한 냉전체제 속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는 인권 논의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간주되었으며, 이러한 입장은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규약 초안 논의 시에 미국과 영국 대표단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3장 참고).

두 번째는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달랐다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과학기술은 공동의 선이라고 인식되어 왔었고, 과학기술의 향상은 곧 공동체의 복지와 행복을 기약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⁹¹⁾ 그러나 무역체제에 지식재산권을 포함하면서부터 과학기술은 무역의 중심적인 도구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이는 인권규범 초안 논의 시의 인식과는 확연히 다른 것으로, 당시 초안자들은 기업 등 비국가행위자의 이익을 목표로 과학이 발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가 권리 실현에 한계를 부여해야 할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하였다. TRIPS 협정 이전까지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지금처럼 강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작자 보호를 위한 규범이 인권규범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규범에 포함된 다른 인권들과 갈등을 일으킬 요소가 없었으나 오늘날 강화된 지식재산권은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어 다른 인권과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4.1. 특정한 개인을 위한 권리

첫 번째 함의는 특정한 개인을 위한 권리가 사회권에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Karel Vasak의 인권 패러다임 관점에서,⁹²⁾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가 국제인권규범에 포함된 것은 혁신적인 일이다. 제1세대 자유권이나 2세대 사회권 모두 ‘보편적인 개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는데, 창작자의 권리는 ‘특정한 개인 집단’에 대한 권리가기 때문이다. 일반 노동자를 위한 보호는 이미 노동권 관련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지적 노동자만을 위한 권리를 별도로 규정한다는 것에 반감이 컸다. 특히 2세대 인권의 핵심은 산업혁명 이후 발달한 자본주의 속에서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인데,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는 이러한 핵심적인 가치와

91) 박은정, “생명공학기술과 인권”, 유네스코한국위원회(편), 과학기술과 인권, 당대, 2001, 30면.

92) Karel Vasak 교수는 3세대 권리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인권 담론을 구분하는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분류 방식이다. 1세대는 소극적 권리로 시민적, 정치적 자유에 해당하며, 2세대 권리는 국가의 적극적 행동을 전제로 하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권을 포함한다. 제3세대 인권은 ‘연대의 권리(rights of solidarity)’로, 국가와 다른 정치적 단위뿐 아니라 개인들의 집단적 행동을 요구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Spasimir Domaradzki et al, “Karel Vasak’s Generations of Rights and the Contemporary Human Rights Discourse”, *Human Rights Review*, Vol.20(2019), pp. 424-425.

동일선상에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규범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며, 이는 창작자의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권리로서 인정한다는 것이므로 큰 의의를 가진다.

또한 초안 논의 시 특정 집단을 위한 권리라는 반대에 맞서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주도적으로 주장한 국가가 오늘날 지식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미국이 아닌, 프랑스, 멕시코, 쿠바라는 것도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이는 몇 가지의 이유 때문일 것으로 추론된다. 첫 번째는 관습법 전통의 미국, 영국은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인센티브를 주는 정도로 이해하기 때문에 기본적 인권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본 것이고, 대륙법 전통의 프랑스는 창작물과 창작자의 사이의 인격적 유대를 통한 추가적인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⁹³⁾ 두 번째로, 사회주의 진영의 국가인 멕시코, 쿠바는 사회권 보장에 대한 열망이 컸으며 미주인권선언 초안 작성 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만장일치로 채택시킨 전례가 있었다는 점이다.

4.2. 지식재산권에 내재된 개인의 창작성만을 보호

두 번째 함의는 개인의 창작성을 보호하는 것일 뿐 지식재산권에 내재된 권리 전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제인권규범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창작성을 통해 창작자 개인이 사회적 인정과 같은 창작의 즐거움을 느끼고, 이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성과 창의성을 보호하는 것일 뿐 산업발전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제도적 기능 모두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먼저,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의 경우, 모든 창작물이 아닌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창작물에만 권리가 부여되며,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공적장부에 등록된 창작자와 명세서에 기재된 범위에 대해서만 보호가 이루어지며, 최초의 출원신청인이 반드시 최초의 창작자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창작자의 권리와 시작점부터 다르다. 또한 권리가 발생·변경·소멸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하나의 권리를 2인 이상이 사용·수익·처분하는 등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능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는 불가침, 불가양성이라는 인권의 대전제에 어긋나므로 인권이라 볼 수 없다. 즉, 지식재산권에서 보호하고 있는 창작자의 정신적, 물질적 이익에 대한 권리는 인권에 해당하지만 지식재산권에 내재된 권리 중 인권 원칙에 반하는 부분은 국제인권규범에서 보호하는 가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에서도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다. 창작자의 권리는 본질적으로 인권으로서 모든 사람의 천부적 존엄성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것임에 반해 지식재산권은 지식재산권제도에서 인정하는 법적 권리로서 구별된다는 것이다. 인권은 보편적인 권리이며, 인간에 내재하는 근본적인 권리이나 지식재산권은 발명과 창작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해,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이익을 확보하도록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품의 완전성을 보전하는 수단으로써 일시적이며, 취소되거나 양도될 수 있는 권리고, 주로 기업의 이익과 투자를 보호하는 권리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법 또는 국제협정에서 지식재산권으로 지칭되는 것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⁹⁴⁾

93) 미국과 프랑스의 대립된 견해에 대해 Lea Shaver 교수는 관습법 전통에서 저작자가 저작물의 출판을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는 오로지 경제적,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만 창의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대륙법 전통에서는 자연법 개념인 저작인격권을 통해 창작물을 창작자 인격의 연장이라는 윤리적 개념에 근거하여 저작자의 양도할 수 없는 추가적인 권리를 인정한다. 대륙법 관점에서 볼 때, 저작자의 권리는 다른 인권과 동일한 근거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선언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며, 관습법의 관점에서 볼 때 저작인격권 조항은 경제 및 무역법의 영역에 더 적절하게 속하는 복잡한 분쟁의 영역을 도입할 위험이 있다. Lea Bishop, *supra* note 89, p. 172.

사회권위원회와 같은 권위 있는 기관의 해석은 조약의 해석에 있어서 후속 관행을 평가하는데 관련성 있는 문서 중 하나로,⁹⁵⁾ 사회권규약 해석에 참조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제6조에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여,⁹⁶⁾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직접 수용할 수 있는 일원론을 취하고 있으므로, 국제규범 또는 그 이행에 대한 권위 있는 기관의 해석, 국제관습법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국제적 관행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규약상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권위원회와 관련 국제기구의 성명, 보고서, 해석 등을 필수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4.3. 국제영역에서 창작자 보호의 실효성 확대

세 번째 함의는 국내법이 닿지 않는 국제영역에서 인권으로서의 창작자 보호의 실효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내법으로 보호하고 있으나 국가마다 수준이 상이하다. 국제적 영역에서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분쟁의 당사국들이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으므로, 관련 국제법에 근거하여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지식재산권의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인 경우,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이나 TRIPS 협정, FTA의 지식재산권 조항을 이용해 해결할 수 있으나 인권으로서의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분쟁의 경우에는 국제인권규범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회권규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으로서, 당사국은 규약상의 권리 보호를 위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의무에 의해 국내뿐 아니라 국제영역에서도 인권으로서의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가 보장된다. 사회권규약의 당사국은 의무를 규정한 제2조에 따라 규약상 보호되는 모든 인권에 대해 일반적인 의무, 핵심적인 의무, 국제협력의 의무 등을 지니게 되는데 이에 따라 제15조 제1항 제c호의 창작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일정한 법적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먼저 당사국은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얻을 모든 사람의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목표로 점진적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모든 인권에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존중, 보호, 이행의 의무를 부담한다. 존중의 의무란 창작자가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얻을 권리를 향유하는 데 당사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을 말하며, 보호의 의무는 제3자로의 침해로부터 창작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를 말한다. 이에 따라 당사국은 제3자가 창작자임을 주장할 권리(authorship)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창작품에 왜곡, 훼손, 변경과 같이 창작자의 명예와 명성에 손상을 입히는 방식으로 폄하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통신 및 복제기술을 이용하여 창작물을 허가 없이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며, 허가 없는 이용으로 발생한 부당한 손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⁹⁷⁾ 이행의 의무는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그리고 기타의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말한다.⁹⁸⁾ 사회권규약의 의무는 즉각적인 권리 실현이 어려워 규약 제2조에서도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

94) UN CESCR, supra note 12, paras. 1-2.

95) 국제법상 조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에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따르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조약을 해석하는 일반규칙으로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조약의 해석이나 그 조약규정의 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추후의 합의, 또는 추후의 관행이 참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와 같은 국제문서들은 비록 비국가행위자의 해석이나 대부분의 인권규범을 관련 위원회가 해석권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속 관행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정인섭, 상계서(각주20), 183면, 213면.

96) 헌법 제6조 제1항에서는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관습국제법을 의미한다.

97) UN CESCR, supra note 12, para. 31.

98) Id., paras. 25-29.

으나 핵심적인 의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효력이 발생한다.⁹⁹⁾

사회권규약은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확보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법은 당사국의 국내적 이행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조약 의무의 구체적 이행방법은 각 당사국이 알아서 결정할 사항에 속한다. 이에 따라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문제는 국제법의 수용방식에 따라 다르며 일원론을 취하는 국가는 조약 내용을 직접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이원론을 취하는 국가는 국내법으로 변형하여 적용하게 된다.¹⁰⁰⁾ 이러한 까닭에 국제인권규범의 제정 시 규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UN 인권위원회는 국제적 차원의 규약의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을 별도로 만들고자 노력했으며, 국가보고제도, 국가 간 통보제도, 개인통보제도를 설치하는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개인통보제도는 국가 간 이견 속에서 합의는 되었으나 사회권규약 자체의 가입을 방해할 수 있어 규약에 포함되지 않고 선택의정서에만 포함되었다.¹⁰¹⁾ 이에 따라 선택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국가보고제도, 국가 간 통보제도만을 이용하여 당사국에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¹⁰²⁾ 사실상 국제인권규범에 포함된 인권목록과 권리의 내용은 각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 각 당사국이 이행하는 데 크게 문제가 될 상황은 없으나 규약상의 권리 이행 위반으로 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국가가 결과에 불만이 있을 시에는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¹⁰³⁾ 이외의 경우에 규약상 권리 침해나 의무 위반으로 인해 국제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재재판이나 지역인권재판소, ICJ 등의 국제분쟁해결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국제인권규범에는 통상조약에서 볼 수 있는 보복조치 같은 강제력을 가진 수단들이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자유권규약이나 사회권규약에 대한 집행력 부족 문제가 오래도록 제기되어 왔다. 다만 이러한 약한 집행 메커니즘 속에서도 대부분의 국가는 국내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거나 신장시키도록 설계된 조약을 비준하고, 인권규범을 준수하고 이행하고 있다. 이는 조약을 이행하는 데 따르는 손익을 계산하여 이루어지는 합리주의적 관점과 외부적 압력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¹⁰⁴⁾ 각 당사국이 이를 준수하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이러한 자발적인 준수 노력은 사회권규약상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준다.

5. 나가며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으로 구성된 국제인권장전의 채택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설립된 UN의 굵직한 성과물이다. 잔혹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자 모인 58개의 국가들이 하나의 공통된 기준을 선언하고 기본원칙을 약속한 것은 인류 역사상 기념비적인 일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마그나 카르타”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참여한 모든 국가들의

99) 핵심적인 의무는 ‘보호를 위한 입법적 조치 및 기타 필요한 조치, 창작자의 명예와 명성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에 대해 이의제기할 권리의 보호, 창작자가 적절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물질적 이익의 보호, 침해가 발생한 경우 행정적, 사법적 또는 기타 적절한 구제수단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 보장, 사회권규약에서 보호하는 다른 권리들의 실현과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 등이다. Id., paras. 39-40.

100) 정인섭, 상계서(각주20), 415면.

101) 정인섭 외 5인, 「국제인권규약 주해」, 박영사, 2023, 8-9면.

102) 우리나라는 선택의정서에는 가입하지 않아, 국가보고제도와 국가 간 통보제도의 대상이 되는데, 국가보고제도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를 통하여 인권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심사 및 점검을 받고 있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인권NAP)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조재현, 김형섭 상계서(각주109), 118면.

103) 정인섭 외 5인, 상계서(각주108), 9면.

104) 조재현, 김형섭, 상계서(각주109), 120-121면.

오랜 노력과 도덕적 지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¹⁰⁵⁾ 이러한 지지 속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인정된 것이다.

창작자의 권리를 기본적 인권으로 천명하는 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미국, 영국,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적노동자라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과 교육권과 사상의 자유 등 다른 권리에서 이미 보호하고 있다는 의견, 인권규범이 아닌 다른 별도의 협약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창작자의 권리 자체를 인권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 등 다양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이제는 인류의 진보와 복지에 기여한 지적노동자, 과학자, 작가로서의 개인의 권리를 선언해야 하며, 연구를 인정받고자 하는 과학자와 문학 또는 예술작품의 왜곡, 복제 등의 피해에서 창작품을 보호하고자 하는 창작자의 보호가 특허와 로열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창작자의 정신적, 물질적 이익에 대한 보호를 국제인권규범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오늘날 지식재산권 강국으로서 그 어느 국가보다 지식재산권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미국이 창작자의 권리를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는 데 소극적이었다는 것도 특기할 만하지만,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규약의 준비문서에서 멕시코, 쿠바 등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활약했다는 것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사회주의 멕시코를 따라 1930년대와 40년대에 헌법에 사회권을 포함시키면서 사회권 보장과 관련된 주장을 많이 개진하였고, 미주인권선언도 초안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국가들의 헌법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¹⁰⁶⁾ 특히 멕시코는 미주인권선언 초안 논의 시에 창작자의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을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채택된 경험을 갖고 있어, 세계인권선언 초안 논의 시에도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적극성을 보일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창작자의 권리가 곧바로 지식재산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회권위원회는 일반논평 17호, 25호를 통해 이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세계인권선언 제27조와 사회권규약 제15조의 창작자의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는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여 영속적이며, 양도되지 않는 생래적인 권리이나 지식재산권은 양도 가능하며 무효, 취소가 가능한 한정적인 권리라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인권적 측면에서 창작자의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는 인간존엄성과 창의성의 표현으로서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고, 공동의 선으로서 사회권규약상의 다른 인권과 조화 속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권리이다.¹⁰⁷⁾

그렇다면 창작자의 권리를 국제인권규범에 규정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세계인권선언은 관습국제법으로서 인정받고 있고, 사회권규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다. 국제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권리로서의 창작자의 권리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제 영역에서 그 보호가 실효적일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이나 TRIPS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가 사회권규약의 당사국이라면, 인권으로서의 창작자의 권리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 규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권리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 사회권규약에서 명시하고 있듯 당사국은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점진적으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외에도 구체적인 존중, 보호, 이행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창작자의 권리가 국제인권규범에서 기본적 인권으로 천명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이는 여러 국가들이 오랜 시간 논쟁 끝에 채택한 창작자의 권리 보호 규정을 초안자들의 관점에서 더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창작자를 인격적으로 창작품과 연결해주는 창

105) William A. Schabas, *supra* note 31, p. 3030.

106) Ben Saul, *supra* note 11, p. 14.

107) Audrey R. Chapman, "Approaching intellectual property as a human right: obligations related to Article 15 (1) (c)", Edit. by Unesco, *Copyright Bulletin*, Volume XXXV, No.3, Unesco, 2001, p. 14.

작자의 권리는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본질적인 권리이며, 사회문화 발전을 위한 토대로,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국제인권규범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창작자의 권리가 지식재산권 남용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포함한 사회권규약 당사국은 창작자의 권리가 다른 인권의 향유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등 국내적 관행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적절한 시정조치 등 자발적인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References)

단행본(국내 및 동양)

- 김영석, 「국제법」, 박영사, 2010.
- 박은정, “생명공학기술과 인권”, 유네스코한국위원회(편), 과학기술과 인권, 당대, 2001.
- 정인섭, 「조약법 강의」, 박영사, 2016.
- 정인섭 외 5인, 「국제인권규약 주해」, 박영사, 2023.

단행본(서양)

- Audrey R. Chapman, “Approaching intellectual property as a human right: obligations related to Article 15 (1) (c)”, Edit. by Unesco, Copyright Bulletin, Volume XXXV, No.3, Unesco, 2001.
- Cesare P.R. Romano, “The Origins of the Right to Science: the American Declaration on the Rights and Duties of Man”(April 27, 2020), Edit. by Porsdam H. and S. Porsdam Mann, The Right to Science: Then and Now, Cambridge University Press, Loyola Law School, Los Angeles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No. 2020-12, 2020.
- Jonathan Griffiths,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Right to a Fair Trial”(January 18, 2016), Edit. by C Geiger, Edward Elgar, Research Handbook on Human Rights & Intellectual Property, 2015.
- William A. Schabas, “Study of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Edit. by Y. Donders and V. Volodin, Human Rights in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Legal Developments and Challenges, Ashgate, 2007.

학술지(국내 및 동양)

- 강명수, “지식재산권 보호의 균형과 헌법의 개정 방향”, 「법과정책」, 제27권 제3호(2021).
- 박성호, “지적재산권에 관한 헌법 제22조 제2항의 의미와 내용”, 「법학논총」, 제24권 제1호(2007).
- 이규홍·정필운, “헌법 제22조 제2항 관련 개헌론에 관한 소고-지적재산권조항의 재정립에 관하여-”, 「법조」, 제59권 제11호(2010).
- 조재현, 김형섭, “국제인권규범의 국내법적 효력 - 국제인권규범의 수용과 효력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24권 제2호(2023).
- 최승재·이진수, “헌법 제22조와 발명자권, 특허법개정에 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6권 제3호(2021).

학술지(서양)

- Ben Saul, “Introduction: The Drafting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48-1966 (September 21, 2015).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RAVAUX PREPARATOIRES”, *Sydney Law School Research Paper*, No.15/79(2016).
- Lea Bishop(formerly Lea Shaver), “The Right to Science and Culture”, *Wisconsin Law Review* 2010, No.1(2009).
- Samantha Besson, “The ‘Human Right to Science’ qua right to participate in science : The participatory good of science and its human rights dimension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Vol.28 No.4(2023).
- Spasimir Domaradzki et al, “Karel Vasak’s Generations of Rights and the Contemporary Human Rights Discourse”, *Human Rights Review*, Vol.20(2019).

학위논문(국내 및 동양)

항준식, “조약법상 준비문서(Travaux Préparatoires)의 지위 : The Status of Travaux Préparatoires in the Law of Treaties”,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 2022.

인터넷 자료

Mónica Pinto,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2020”, UN, <<https://legal.un.org/avl/ha/icescr/icescr.html>>, 검색일: 2023. 12. 19.

U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https://www.un.org/en/about-us/universal-declaration-of-human-rights>>, 검색일: 2023. 12. 18.

U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Drafting History”, UN, <<https://research.un.org/en/undhr/draftingcommittee>>, 검색일: 2023. 12. 18.

기타 자료

Maria Green in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Drafting History of the Article 15 (1) (c)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2000/15, UN, 2000.

Mexico, “Draft Internation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mendments to Articles 3, 6, 7, 14, 23 And 25 of the Draft Declaration (E/800) / Mexico”, A/C.3/266, UN, 1948.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CESCR), “General Comment No. 17: The Right of Everyone to Benefit from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or She is the Author (Art. 15, Para. 1 (c) of the Covenant)”, E/C.12/GC/17, UN, 2006.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port of the 3rd session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Lake Success”, E/800, UN, 1948.

_____, “Drafting Committee on an International Bill of Rights, Drafting Committee on an International Bill of Rights, 1st session : report of the Drafting Committee to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E/CN.4/21, UN, 1947.

_____, “Drafting Committee on an International Bill of Rights, International Bill of Rights documented outline”, E/CN.4/AC.1/3, UN, 1947.

_____, “Report of the 10th session, 23 February-16 April 1954”, E/CN.4/705, UN, 1954.

_____, “Summary record of 42nd meeting, held at the Palais des Nations, Geneva, on Tuesday, 16 December 1947 : Commission on Human Rights, 2nd session”, E/CN.4/SR.42, UN, 1947.

_____, “Working Group on the Declaration on Human Rights, Addendum to the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Commission on Human Rights, 2nd session”, E/CN.4/57, UN, 1947.

UN General Assembly, “Preparation of a draft Covenant on Human Rights and draft measures of implementation”, A/RES/217(III), UN, 1948.

_____, 3rd Committee, “Draft Internation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report of the 3rd Committee : General Assembly, 3rd session”, A/777, UN, 1948.

_____, “Cultural rights”, A/70/279, UN, 2015.

_____, “Draft 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A/RES/1960(XVIII), UN, 1964.

_____, “Draft 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Annotation.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to the tenth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A/2929, UN, 1955.

_____,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s, 12th session : 3rd Committee, 799th meeting, Monday, 4 November 1957, New York”, A/C.3/SR.799, UN, 1957.

_____, "Hundred and seventy-eighth plenary meeting, held at the Palais de Chaillot, Paris, on Thursday, 9 December 1948 : [General Assembly, 3rd session]", A/PV.178, UN, 1948.

_____, 3rd Committee. Subcommittee 4, "Report of Sub-Committee 4 of the 3rd Committee/submitted by Alan S. Watt (Australia), Rapporteur", A/C.3/400/Rev.1, UN, 1948.